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 의 명 :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1. 27.(금) 14:0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과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02-64-29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제이티비씨(주)에 대해 <불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한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의결주문입니다. <1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매일방송에 대하여 재승인을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불임2>와 같이 방송연장을 명령한다. <2안>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매일방송에 대해 <불임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으로 한다.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불임3>의 재승인 조건 중 <3>번 및 <10>~<16>번까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주요조건 보시겠습니다. <3>번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상생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주)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1>번입니다.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경영혁신방안에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 개선, 경영·회계 관련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할 것. <12>번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의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3>번입니다.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4>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할 것. <15>번입니다.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협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은 관련 방안을 이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16>번입니다.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승인 유효기간이 2020년 11월 30일 만료되는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작년 5월 10일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고, 올해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국민이 묻는다'가 포함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 동안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중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주)매일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2020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제이티비씨(주)는 총 1,000점 만점의 714.89점을 획득하였고, 중점심사사항 중 과락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MBN의 경우 640.50점을 받았고, 중점심사사항 과락은 없었지만 개별심사사항 <5>번 항목에서 50%에 미달하였습니다. 650점에 미달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의견입니다. 종합소견은 2017년과 비교하여 장르의 다양성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전 재승인 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시청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작여건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종편PP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매일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정례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언론환경에서 종편PP 뉴스의 신뢰도 하락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뉴스 등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외부 기관의 컨설팅 등 지적을 수용하여 조속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사항별 소견입니다.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JTBC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함양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나, 기업의 경영 환경상 추가적인 지역·사회에의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직능별 다양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있어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승인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인하여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주주 대표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과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실적은 많은데 상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JTBC에 대해서는 장르별 균형성,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수준의 우수성으로 시청률의 성취도 거두었고, 시청률이 낮은 경우도 기획의 참신함을 갖춘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의견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사가 대주주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도의 독립성 및 편성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변화하는 방송환경과 시청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하며, 시사논평 프로그램은 과다한 반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여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기여도도 낮고, 재난방송 및 어린이 방송 편성 등도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사와의 연계편성과 관련하여 타 종편PP에 비해 문제가 심각하고 시청자의 신뢰 상실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JTBC에 대해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자본의 92%가 잠식된 상태이며, 2020년에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가 511억원에 달하므로 영업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자금계획을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최초 승인 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 이므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님에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JTBC에 대해서는 보도국 기자가 중앙일보사 소속이며, JTBC는 중앙일보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 조성 및 외주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매일방송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은 지난 11월 23일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루어졌고, 청문 주재자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였습니다. 참석자는 (주)매일방송에서 류호길 대표이사, (주)매일경제신문사에서 최대주주 자격으로 장승준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매일방송 및 (주)매일경제 신문사 의견진술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9년간 방송하면서 장기간 사랑받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나 (주)매일방송을 상징하는 대형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락점수를 받은 방송발전·상생협력 계획을 검토하여 외주상생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으며, 외주 제작사 제작비를 현실화하고 중소 외주제작사를 위한 외주 상생기금을 매년 100억 원씩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광고수익이 전부 감소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노력할 예정이며, 외주 상생기금은 사내유보금으로 먼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주제작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MBN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생위원회에서 선정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선 지급하고 공모제를 운영해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사 동수 공정방송 위원회, 평기자가 참석하는 열린 편집회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 운영 외에 종편 4사 중 유일하게 한국기자협회 등이 운영하는 ‘페트 체크넷’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보도국장 신임 투표제,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추천 등을 수용하고, 방송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정성 평가’를 의뢰하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내부 동요를 중이기 위해 노조와 고용·임금·복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행 유지를 합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방통위 권고에 따라 협력업체 피해 감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유·경영 분리를 위해 최대주주가 방송사의 업무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승준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현재 (주)매일방송의 사내이사는 최대주주에서 맡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청문결과, 최초 승인 시 자본금 편법충당으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2020년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지 못했고 청문회에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앞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문과정에서 밝힌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고,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주)매일방송이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은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에 대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 종사자가 3,000여명에 달함과 동시에 약 900만의 시청가구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재승인 거부 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의 방송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심사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도 마련하고 시행하여 시청자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사로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시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경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보와 협력업체 피해방안 및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 안정화 방안, 방송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외주제작사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편성의 다양성 제고 및 홈쇼핑 채널과의 연계편성 금지 방안,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조치 방안 및 최대주주가 방송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이티비씨(주)에 대한 검토 의견은 방송 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이티비씨(주)는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심사평가 결과 70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을 부여하고 이행실적 점검주기도 2년마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콘텐츠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데, 외주제작사와의 상생을 위해 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강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협찬고지를 의무화하여 시청자들이 협찬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제이티비씨(주)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중앙일보(주)에서 채용한 기자가 중앙일보(주)와 제이티비씨(주) 간에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제이티비씨(주) 보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취지에 맞지 않고, 소유·경영의 분리가 미흡하여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중앙일보(주)의 기자파견 등을 해소하도록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중앙일보 소속 기자가 제이티비씨(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태는 그 실질이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에 미달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최초 승인 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며, 방송사업자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청문주재자도 (주)매일방송이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에 대해 이미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및 시청자 등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심사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했으나, 청문 이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 상생방안 등 추가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을 거부하기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한 경영진 및 임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종사자 대표의 의견과 외부기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도록 하여 내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임 시 공모제도를 활용하여 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차명주식에 해당되는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감소한 자본금을 최초승인 시 위원회와 약속한 금액으로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 이하로 나온 점, 심사위원회에서도 사업자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해손되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점, 청문주재자도 경영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이 제출한 추가개선계획의 이행과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 등과 관련된 조건을 주요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아래 주요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에 미달하고 부가된 조건·권고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권고의 이행 점검주기를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6개월로 하기로 합니다.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시 재승인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MBN에 대해 <1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방송연장명령을 11월 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승인장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12월 말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들어가겠는데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순서에 따라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순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이티비씨(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JTBC에 관한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기업이나 특정 언론의 여론시장 지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신문산업이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언론시장 진입에 장벽을 두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신문사가 공공재인 방송사업에 진출할 경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 여론시장에서의 독과점을 경계한 것입니다. 법으로 신문사나 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두고 신문사가 경영하고 있는 종편채널방송사의 시청률을 조사·발표할 때에도 단순하게 종편 시청률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문구독률을 방송시청률로 환산하고 이를 방송

시청률에 더해 시청점유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도 여론시장에서 특정 언론의 독과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신문 또는 통신사와 방송을 겸영하고 있는 종편 또는 뉴스 전문채널 사업자 사이에 상호간 취재 보도인력 파견을 해소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사와 종편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의 인력 교환 문제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여론시장 참여자들에게 국가가 지켜줄 것을 권유한 규칙이었고, 스스로 지키려 노력해 온 규범이고, 이 자리가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공박 하자는 자리도 아닌 만큼 일단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재승인 시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채널A나 TV조선, 연합뉴스채널 등이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일보와 JTBC 양사의 인력 운용 방식은 우리 사회의 여론시장 참여자들이 동의해 온 자본과 경영, 이것은 편집국 또는 보도국의 운영이 되겠지요. 경영의 상호 독립, 그리고 인쇄매체를 보유한 언론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언론의 운영규범을 일거에 무력화한 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JTBC는 손석희, 홍정도 등 공동대표이사와 몇몇 임원을 제외한 전원이 중앙일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논리로만 말하자면 중앙일보가 JTBC가 방영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돈을 받고 JTBC에 파는 구조입니다. JTBC 측은 이를 JTBC와 중앙일보사 간에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인 만큼 중앙일보 사원으로 JTBC 사원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JTB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JTBC는 중앙일보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중앙일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자 등 사원이 만든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체의 용역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앙일보는 JTBC를 대신해 사원 선발과 인력운용 프로그램 제작 등 모든 일을 한 결과, 그 결과물을 JTBC에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판매했으며, JTBC는 이를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했으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JTBC 주장대로라면 중앙일보가 JTBC의 뉴스제작은 물론 인력운용 등 전반에 걸쳐 관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공공재인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적용해 온 방송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여론시장에서 특정 언론의 독과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앙일보와 TBC 그리고 경향신문과 MBC가 같은 회사일 때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동시에 사원을 선발해 개인 선택이나 적성에 맞추어 신문으로 또 방송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인력운용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2008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고 종편 채널이 개국할 당시에 자본의 방송시장 지분제한과 특정 언론의 과도한 여론 지배력 경계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또 그 이후에 방통위가 각 개별 사업자들에게 인력 파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JTBC의 주장은 그 근거가 허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JTBC의 주장대로라면 방송법상 허가 취지에 맞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심사위원회의 시각에 동의합니다. 여론 시장에서 독과점을 극도로 경계하며, 합의한 우리 사회의 공동체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방송사에 5년 재승인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장의 규칙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번에 JTBC가 얻은 점수가

우리가 그동안에 합의하여 만든 채점표에 따른 것이며, 이 점수는 다른 종편 사업자를 훨씬 능가하는 높은 점수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또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한 심사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잘못이 있음을 즉시 시인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또 일정 기간 이내에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승인(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같은 고용과 도급방식을 과연으로 볼 경우 과연법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때 현재 중앙일보에 고용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 JTBC 직원들의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사무처가 이행점검은 물론 이행방안 마련에도 많은 점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는 취지이면서 기자 과연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원안에 동의하고 MBN에 대한 심의 말미에 끓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고 JTBC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하고, 존경하는 김효재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그 점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제이티비씨(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처가 제시한 원안에 따라 5년간의 재승인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매일방송 관련입니다. (주)매일방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합편성 채널은 초기보다는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시청률이 높아진 점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별사업자로서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역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방송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매일방송 같은 경우 많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또 JTBC도 마찬가지로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권고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방통위에서도 다음 심사계획을 짤 때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수에 따라서 승인유효기간을 차등화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공정성처럼 계량화하기 어렵고 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항목을 심사 평가 항목으로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방송의 경우 조건부 재승인인 <2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2안>인 승인기간 3년으로 하는 조건부 재승인(안)에 동의하시면서 심사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MBN 재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논의과정에 따라 이 문제를 보는 저의 시각과 처분방향에 대해 충분하게 제 의견을 밝혔으므로 추가로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10년도 훨씬 더 전 일에 있었던 대주주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왜 오늘의 MBN 종사자들과 외주제작업체들, 또 관련업체들, MBN 시청자들이 져야 하느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들이 져야 하느냐는 언론학자의 질책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MBN 대주주와 경영책임이 있는 임원들도 이와 같은 지적과 함께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주렁주렁 달린 재승인의 조건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방통위와 한 약속을 지키는데 추호의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대주주나 특정 언론사의 과도한 여론지배력도 물론 경계해야 하지만 숫자를 앞세운 특정 세력의 여론 지배 또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대주주의 사소한 사익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지배를 허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승인 거부가 아닌 <2안> 조건부 재승인에 동의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조건부 재승인에 동의하시면서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다는 의견 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번에 사무처에서 자세한 조건(안)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2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도 <2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 부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과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지난 10월 30일 6개월간 방송업무 전부 정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MBN이 재승인 심사 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점수를 떠나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막강한 방송사가 차명주식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6개월 전부 정지할 때 '95년도부터 보도채널을 운영했고 종사자나 외주제작자들의 처지, 시청자의 권리, 그리고 늦었지만 대국민 사과와 최대주주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방송 전부 정지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지난 25일 노사합의문에 있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국장 신임 투표제 시행하는 점, 시청자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하겠다는 것, 방통위 행정처분에 대해 노사 상호 협력을 하겠다는 점 등이 이후에 추후의 혼들림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2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현 부위원장님 역시 <2안>에 동의하시면서 매일방송에 대한 강력한 조건 이행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이 매일방송에 대해 <2안>으로 의결한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위원장님, <2안>으로 결정되어서 일반 공통조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시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이 <2안>으로 결정되면서 JTBC와 MBN에 공통적으로 부가되는 조건들은 상반기 종편 사업자에게 부가됐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내용과 방송 심의규정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하고, 선거방송의 경우 2건 이하로 하고, 그리고 외부전문 기관의 평가를 통해 공정성 평가를 받으라는 내용과 연계편성을 통한 협찬을 고지하라는 내용과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준수하라는 내용, 권고사항에서는 편성위원회 관련된 내용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하라는 내용, 그리고 소유·경영 분리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권고사항으로 각각 공통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의 공통조건과 각사에 특별한 조건들이 부가된 <2안>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JTBC의 승인조건은 <붙임>에 있는 <8>번이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종편 4사가 동일하게 제시된 의견을 아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물어본 것은 JTBC의 조건부 가운데 <8>번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아까 보고할 때 <붙임>으로 해서 <8>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8>번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 소속 기자(보도총괄 등 직책자 포함)의 파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할 것. 관련 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이행실적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매일방송에 대해 3년간 조건부 재승인하는 <2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로 종편 4개사에 대한 세 번째 재승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종편 출범 후 약 10년 동안 외형적 성장도 있었고

콘텐츠 다양성도 초기 출범 시보다는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나 기대와는 그렇지만 여전히 간극이 있고 그로 인해 재승인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의견들을 보탠 것 같습니다. 종편 재승인을 위해 제출한 계획과 부가받은 조건의 성실한 이행으로 특허사업자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도 종편사업자의 개선계획 승인과 이행 여부 점검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재승인·재허가의 심사 체계 효과 전반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이은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계획을 통해 이행의지를 밝힌 것과 시청자 피해를 고려한 결정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결정이 위원회가 종편의 공적 책임을 견인하고 종편이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1분 폐회 】